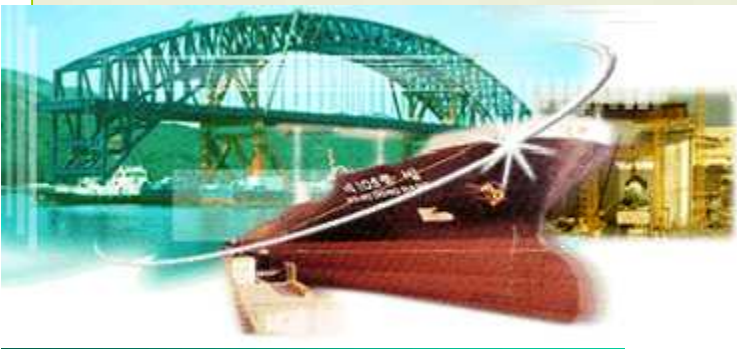


CISG 제3편

제2장 매도인의 의무
제3절(제45조-제50조)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원광대학교

유 하상

UN물품매매협약

CISG 제3편 물품의 매매

제2장 매도인의 의무

제3절(제45조-제50조)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 매수인의 구제방법(제45조)

- (1) 매도인이 계약 또는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다음을 할 수 있다.
 - (가) 제46조 내지 제52조에서 정한 권리의 행사
 - (나) 제74조 내지 제77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청구
- (2)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는 다른 구제를 구하는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상실되지 아니한다.
- (3) 매수인이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경우에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는 매도인에게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없다.

이 조항은 매도인의 계약위반 시에 부여되는 매수인의 구제수단을 개괄하고 있다. CISG는 제 46조부터 제52조까지 매수인의 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4조에서 제77조까지 손해배상의 청구를 규정하고 있다. 이중 손해배상 청구는 다른 모든 구제수단과 병행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매수인의 구제수단에 대해 매도인에게 별도의 유예기간을 법원이나 중재지관이 독자적으로 줄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계약위반

제2장 매도인의 의무

제46조 매수인의 이행청구권

■ 매수인의 이행청구권(제4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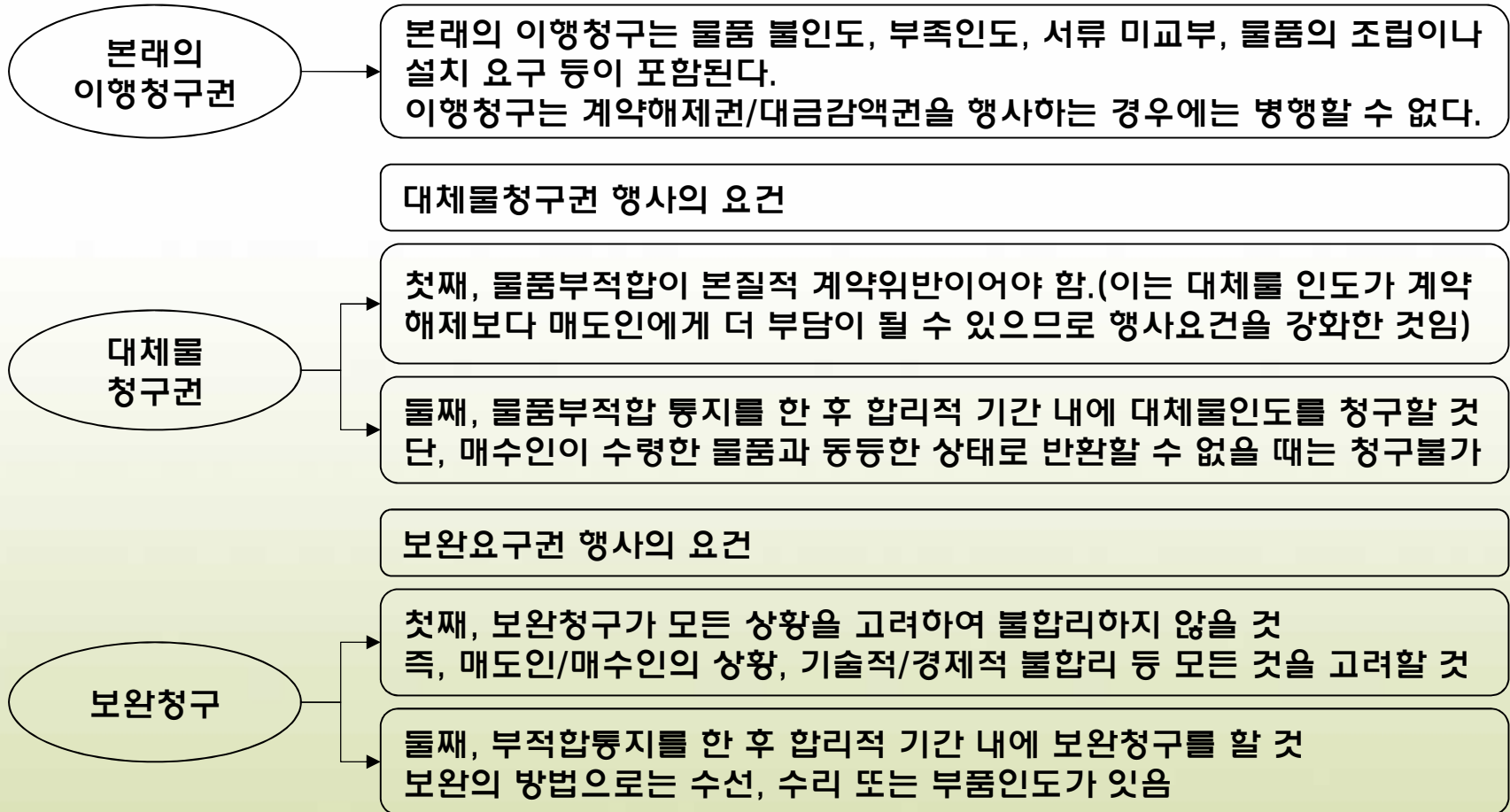
- (1)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이 그 청구와 양립하지 아니하는 구제를 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에 매수인은 대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부적합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하고 그 청구가 제39조의 통지와 동시에 또는 그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행하여진 경우에 한한다.
- (3)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에 매수인은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에게 수리에 의한 부적합의 치유를 청구할 수 있다. 수리 청구는 제39조의 통지와 동시에 또는 그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이 조항은 매수인에게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행청구권은 제28조의 제한을 받는다는 데에 유의해야 한다.
그 외에도 이행청구권의 일종인 대체물인도와 보완청구를 규정하고 있다.

제2장 매도인의 의무

제45조 매수인의 이행청구권

■ 매수인의 이행청구권(제4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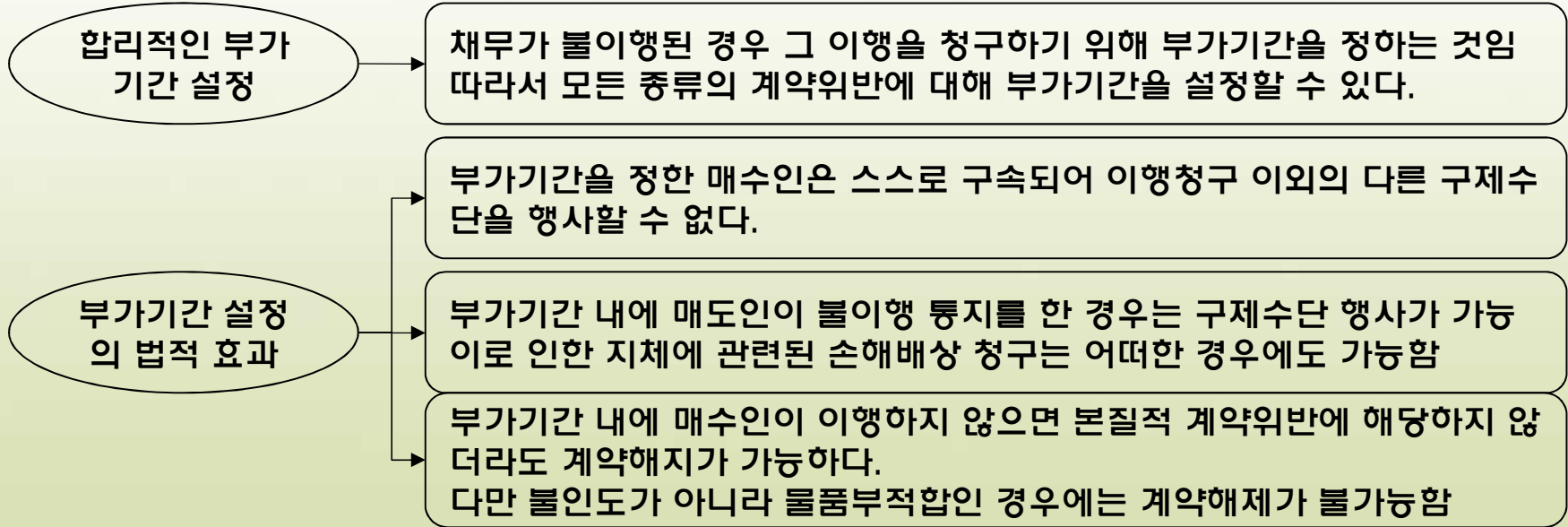
제2장 매도인의 의무

제47조 이행부가기간의 통지

■ 이행부가기간의 통지(제47조)

- (1)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 (2) 매도인으로부터 그 부가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수령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수인은 그 기간 중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할 수 없다. 그러나 매수인은 이로 인한 이행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매수인의 이행청구권의 보충규정이다. 즉, 매도인이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매수인은 부가기간을 정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부가기간 설정의 중요한 기능은 부가기간이 경과하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불인도가 아니라 물품부적합인 경우에는 본질적 위반이 아닌 한 부가기간 경과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



제2장 매도인의 의무

제48조 인도기일 후의 보완

■ 인도기일 후의 보완(제48조)

- (1) 제49조를 따를 것을 조건으로, 매도인은 인도기일 후에도 불합리하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 또는 매수인의 선급비용을 매도인으로부터 상환 받는 데 대한 불안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비용으로 의무의 불이행을 치유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은 이 협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保有한다.
- (2)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의 수령여부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매수인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요구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할 수 있다. 매수인은 그 기간 중에는 매도인의 이행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구제를 구할 수 없다.
- (3) 특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겠다는 매도인의 통지는 매수인이 그 결정을 알려야 한다는 제2항의 요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4) 이 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매도인의 요구 또는 통지는 매수인에 의하여 수령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이행기 이후에 존재하는 매도인의 추완권에 대한 규정이다. 이행기 이전에 존재하는 매도인의 추완권을 규정한 제34조와 제37조에 대응하는 규정이다.

제2장 매도인의 의무

제48조 인도기일 후의 보완

■ 인도기일 후의 보완(제48조)

추완의
요건

매도인의 추완권은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여 받는 매도인의 권리이므로 매수인의 권리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첫째, 계약위반이 본질적이어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추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이 경우 매수인의 계약해제 가능성만으로는 추완권이 소멸되지 않으며,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둘째, 매도인의 추완이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지체나 불편을 낳거나 매수인이 이미 지급한 비용을 매도인에서 상환 받는 데 불안이 있다면 행사할 수 없다. 추완방법은 대체물 인도, 부적합보완, 부족분보충, 권리하자 제거 등며 그 선택권은 매도인에게 있으며, 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하여 매수인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추완을 준비하는 매도인으로서 추완권 행사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 과연 추완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인지, 혹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아닐지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매도인은 추완에 대해 매수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대해 규정한 것이 제2항 내지 제4항이다.

추완의
통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추완권 이행을 수령할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도 매수인이 합리적 기간 내에 응답하지 않을 때는 매도인은 그 요구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추완이 가능하다.

제2장 매도인의 의무

제49조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 매수인의 계약해제권(제49조)

(1) 매수인은 다음의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계약 또는 이 협약상 매도인의 의무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되는 경우

(나) 인도불이행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제47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이 정한 부가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내에 인도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경우

(2) 그러나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다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해제권을 상실한다.

(가) 인도지체의 경우, 매수인이 인도가 이루어진 것을 안 후 합리적인 기간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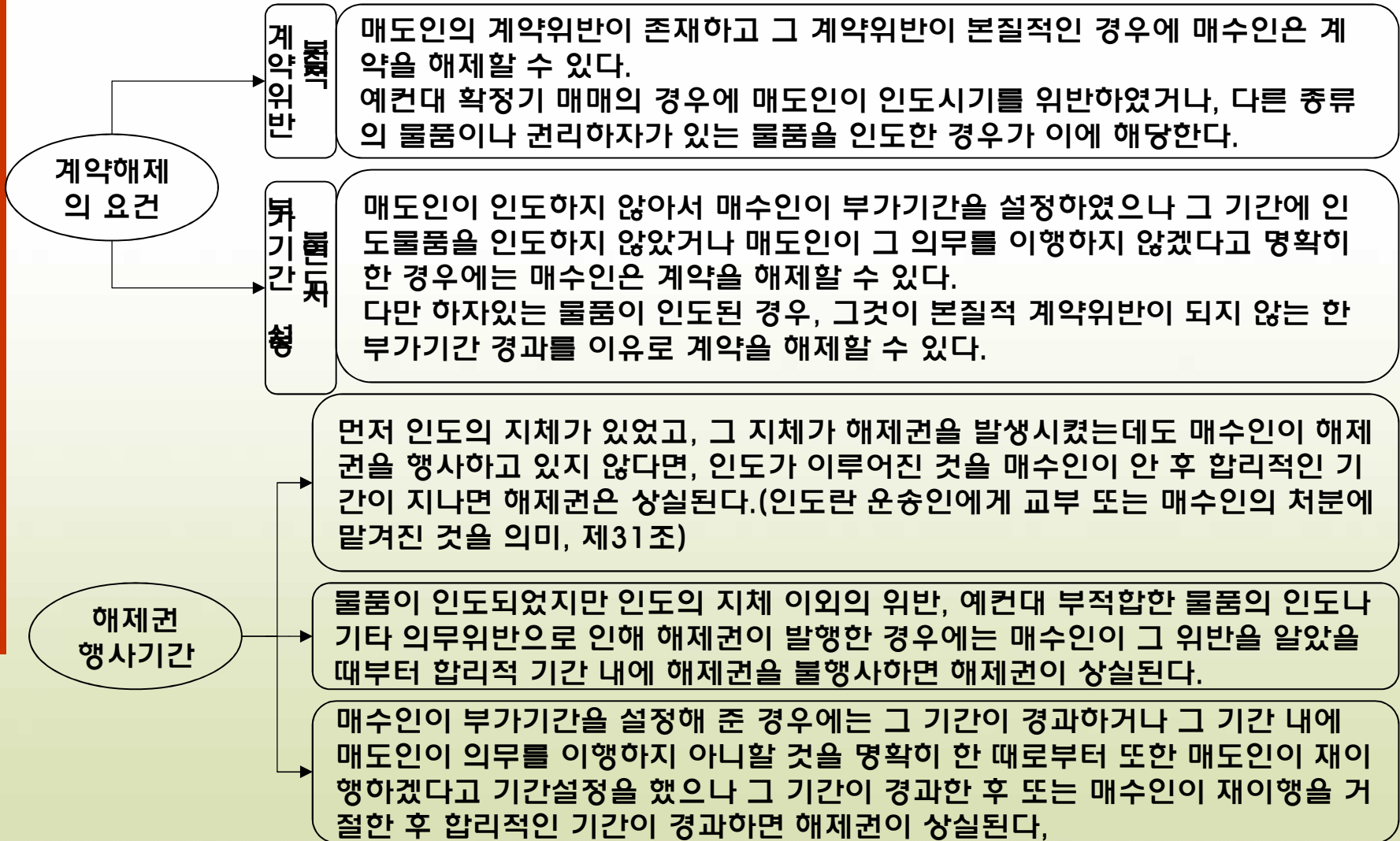
(나) 인도지체 이외의 위반의 경우, 다음의 시기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

- ① 매수인이 그 위반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때
- ② 매수인이 제47조 제1항에 따라 정한 부가기간이 경과한 때 또는 매도인이 그 부가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때
- ③ 매도인이 제48조 제2항에 따라 정한 부가기간이 경과한 때 또는 매수인이 이행을 수령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때

이 조항은 매수인이 언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가를 규정하고 있다. 해제의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제26조와 제27조가 정하고 있고 해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제81조 내지 제84조에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는 해제의 발생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또한 발생된 해제권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상실하도록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국제거래에서는 운송비, 보험료, 통관절차 등으로 인해 계약해제가 이루어지면 상당한 손실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제2장 매도인의 의무

■ 매수인의 계약해제권(제49조)



제2장 매도인의 의무

제50조 대금의 감액

■ 대금의 감액(제50조)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에 대금의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매수인은 실제로 인도된 물품이 인도 시에 가지고 있던 가액이 계약에 적합한 물품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을 가액에 대하여 가지는 동일한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매도인이 제37조나 제38조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을 치유하거나 또는 매수인이 동 조항에 따라 매도인의 이행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

이 조항은 인도된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에 매수인에게 대금을 감액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요건과 효과를 정하고 있다.

대금감액은 손해배상과 유사하지만 요건에 차이가 있다. 예컨대 대금감액은 손해의 발생을 요구하지 않으며, 또한 손해배상에서와 같은 면책사유 제79조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손해배상과는 다른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구제수단이다.

요건

→ 물품을 인도하였지만 계약에 부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산정기준

→ 대금감액의 산정기준은 계약에 적합한 물품과 현실로 인도된 물품 간의 가치차이에 의한다. 산정시점은 인도시점이며, 산정기준 장소는 인도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법적효과

→ 대금감액을 주장하면 즉시 대금에서 감액이 이루어지며, 이미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자 포함)

불인정

→ 매도인이 제37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채무의 불이행을 추완한 경우 또는 매수인이 추완을 수령거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 즉 대금감액권보다는 매도인의 사전적, 사후적 추완권이 앞선다.

제2장 매도인의 의무

제51조 물품 일부의 불일치

■ 물품 일부의 불일치(제51조)

- (1) 매도인이 물품의 일부만을 인도하거나 인도된 물품의 일부만이 계약에 적합한 경우에 제46조 내지 제50조는 부족 또는 부적합한 부분에 적용된다.
- (2) 매수인은 인도가 완전하게 또는 계약에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전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일부불이행, 특히 물품의 일부인도 또는 일부의 부적합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이에 반해 분할인도에 대해서는 제37조가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물품의 일부만 인도되었거나 또는 인도된 물품의 일부만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 또는 부적합에 대해서만 제46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즉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행청구, 대체물인도, 보완청구, 부가기간설정, 매도인의 추완권, 대금감액의 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일부인도 또는 일부의 부적합이 계약전체에 대해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계약전체를 해제할 수 있다. 이때는 반드시 본질적 계약위반을 요구되며, 그것이 계약전체의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계약을 할 수 없다.

제2장 매도인의 의무

제52조 기일전의 인도 및 초과수량

■ 인도기일 전의 인도 및 초과수량(제52조)

- (1) 매도인이 지정된 이행기 전에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 매수인은 이를 수령하거나 또는 거절할 수 있다.
- (2) 매도인이 계약에서 정한 것보다도 많은 수량의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초과분을 수령하거나 이를 거절할 수 있다. 매수인이 초과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한 경우에는 계약대금의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경우를 다루고 있다. 이행기 이전의 사전인도와 초과인도의 경우이다. 양자의 공통점은 매수인이 이를 거절할 수도, 수령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두 가지 모두 매수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전인도

사전인도는 계약위반이므로 매수인은 부적합통지를 하고 이를 거절할 수 있다. 다만 거절하는 경우에도 신의칙에 따른 보관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수령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수령을 인도시기의 변경에 대한 동의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다시말해 이를 수령하였다고 하여 그에 대응하는 매수인의 의무, 예컨대 검사 및 하지통지, 대금지급 의무 등은 본래의 시기대로 행해지면 된다. 왜냐하면 사전인도의 수령으로 매수인이 더 불리해져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다만 매수인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초과인도

매수인은 초과인도 부분을 일부/전부를 수령할 수도 있다. 이때는 그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금액은 시장가격이 아니라 계약가격이다. 매수인이 물품검사시 초과인도를 알았지만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그 전체의 인도물품이 계약의 목적물이 되므로 전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감사합니다